왕숙 한신더휴 센텀(남양주 왕숙 A-17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33-665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국민주택 (공공분양)	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11.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6.05.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공공주택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1.19.(목)	2026.11.30.(월)	2026.12.01.(화)	2026.12.02.(수)	2026.12.08.(화)	2026.12.11.(금)~ 2026.12.13.(일) [3일간]	2027.02.15.(월)~ 2027.02.17.(수) [3일간]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일원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A-17BL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379세대 (전용면적 59㎡A 241세대, 59㎡B 63세대, 59㎡C 75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왕숙 한신더휴 센텀(남양주 왕숙 A-17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주관 업체 안내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신공영㈜ / 쌍용건설㈜ / ㈜대승글로벌 / ㈜고덕종합건설 / ㈜지아이

▣ 시공업체 : 한신공영㈜ / 쌍용건설㈜ / ㈜대승글로벌 / ㈜고덕종합건설 / ㈜지아이

■ **「왕숙 한신더휴 센텀」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 1833-6650)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부적격 처리 혹은 불이익 부과)되며,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신청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청약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부적격 처리 혹은 불이익 부과) 되며,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자격상향지원 등)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왕숙 한신더휴 센텀」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오나, 많은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 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알 려 드 립 니 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11.18.)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19.(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575**이며, **공고문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앱, '왕숙 한신더휴 센텀' 홈페이지(ws-thehue.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신청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중요] 견본주택 관람 안내**

- **[중요]** 견본주택 개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견본주택 개관 일정 **: 2026.11.20.(금) ~ 11.29.(일) 10:00~17:00 (홈페이지(ws-thehue.com)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

*** 견본주택 관람안내**

대 상	관람 일정	주 소	기 타
일반고객	2026.11.20.(금) ~ 2026.11.29.(일) (10:00~17:00)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9번지	* 기간 내 주말, 공휴일 관람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방문예약제로 운영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9번지**

- 견본주택 내 견본세대는 59A가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59B, 59C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 관람이 어려운 분들께서도 홈페이지 및 공급안내문 참고)

- **청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내 실제 건립세대 촬영 영상 및 주택형(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견본 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왕숙 한신더휴 센텀 견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상기 '견본주택 관람 일정' 및 당첨자발표일 이후 서류접수기간 등 사업주체가 별도 안내한 기간 및 대상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관람기간 및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 계약체결 기간 내 견본주택 방문은 홈페이지(ws-thehue.com)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 및 계약체결 기간의 경우 당첨자(또는 예비당첨자)에 한하여 입장 가능)**
-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왕숙 한신더휴 센텀' 홈페이지(ws-thehue.com)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내 전시된 단위세대(견본세대, 세대VR, 모형 등)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입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왕숙 한신더휴 센텀' 홈페이지(ws-thehue.com)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한신공영㈜의 '한신더휴' 브랜드**를 사용합니다.

■ 본 아파트의 브랜드명은 「왕숙 한신더휴 센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 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기간 내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25조, 제34조에 의거 **지역우선 공급기준(<표1>)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25.11.19.**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2) **'25.11.19.**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신청자격 **검증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지역균형발전	협의양도인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순위자)	추첨공급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등	세대구성원 *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제2호 외국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 유지										
세대주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과거 주택소유이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구성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불필요	불필요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불필요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2순위자]** 신청자 본인(가입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2순위자]** 신청자 본인(가입자)
소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200%)		
자산(부동산, 자동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은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세대주 변경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확인**하며, **세대주와의 관계(과거 이력까지 모두 포함)**,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Ⅱ.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6년)**

구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이주대책 대상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협의양도인, 지역균형발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일정	2026.11.30.(월)	2026.12.01.(화)	2026.12.02.(수)	2026.12.08.(화)	2026.12.11.(금) ~ 12.13.(일) (10:00~17:00)	2027.02.15.(월) ~ 02.17.(수) (10:00~16:00)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10:00~14:00)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09:00~16:00)		■ (PC·모바일) 청약홈	왕숙 한신더휴 센텀 견본주택(방문 접수) ※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방문예약제(구비서류 지참 방문)** ※ 왕숙 한신더휴 센텀 홈페이지(ws-thehue.com)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 안내 예정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왕숙 한신더휴 센텀 견본주택 1층(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9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접수 또는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일정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청약 시 입력하신 연락처, 주소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며, 연락처, 주소 오류 기재 또는 변경 시 즉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서면 등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주택법」제64조,「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혼인신고 전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재당첨제한 적용 등의 사항은 배제하지 않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 제4항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해당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주택 처분 완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 호(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야만 해당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특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는 특례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게 특례 사용 처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른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출산특례를 신청하여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분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이 각각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부정청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계약이 불가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직인날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자녀 양육사실을 추가로 증명(공적서류에 한함)할 수 없는 경우 부적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제한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소득·자산 등 자격 조회 불가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재외국민 포함)의 소명서류 제출 불가(해외체류 등으로 인한 소득·자산 조회불가, 연락부재 등으로 인한 소명서류 제출불가, 소득소명 시 기한 후 소득신고서류 등 모든 사유 불인정), 적격여부 심사 시 외국인등록번호 조회 불가 등 모두 불인정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제외)하며, 세대원(배우자 제외)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동·호수는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계약 체결기간에 **왕숙 한신더휴 센텀 견본주택(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9번지)**에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협의양도인은 경쟁 발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예정자를 선정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포함)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사업주체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11.18.)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 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주대책 대상자, 협의양도인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Ⅰ 공급 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공급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일원 남양주 왕숙지구 A-17BL**
■ **공급 규모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공공분양주택 총 379세대(이주대책대상자 12세대, 특별공급 276세대, 일반공급 91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시기 : 2029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

2.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타입(약식표기)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대지면적(㎡)	공급세대수												최고층수	최하층세대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계)		계	이주대책대상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협의양도인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지역균형발전			
2026000575	합 계									379	12	17	34	34	54	11	70	18	32	6	91	29	19
	01	059.9600A	59A	59.9600	22.5291	9.9418	42.7048	135.1357	46.8611	241	11	10	22	22	33	7	42	12	21	4	57	29	12
	02	059.7100B	59B	59.7100	22.4351	9.9004	42.5268	134.5723	46.6657	63	1	3	6	6	9	2	12	3	5	1	15	29	3
	03	059.1400C	59C	59.1400	22.2210	9.8059	42.1208	133.2877	46.2203	75	-	4	6	6	12	2	16	3	6	1	19	29	4

※ **[중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주택형(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ws-thehue.com)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타입)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타입)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타입)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029년 7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시행하는 사업[**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한신공영㈜, 쌍용건설㈜, ㈜대승글로벌, ㈜고덕종합건설, ㈜지아이 / 시공업체 : 한신공영㈜, 쌍용건설㈜, ㈜대승글로벌, ㈜고덕종합건설, ㈜지아이**]입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및 납부일정

■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타입(약식표기)	동(라인)	층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계약 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융자금 제외 잔금	융자금(주택도시기금)
							2027-05-25	2027-09-27	2027-12-28	2028-04-25	2028-08-25	2029-01-25	입주 시	
059.9600A	59A	1701동(3,4호) 1702동(3,4,5호) 1703동(3,4,5호) 1704동(1,3,4,5호)	1층	4	571,050,000	57,105,000	57,105,000	57,105,000	57,105,000	57,105,000	57,105,000	57,105,000	116,315,000	55,000,000
			2층	12	577,120,000	57,712,000	57,712,000	57,712,000	57,712,000	57,712,000	57,712,000	57,712,000	118,136,000	55,000,000
			3층	12	589,270,000	58,927,000	58,927,000	58,927,000	58,927,000	58,927,000	58,927,000	58,927,000	121,781,000	55,000,000
			4층	12	601,420,000	60,142,000	60,142,000	60,142,000	60,142,000	60,142,000	60,142,000	60,142,000	125,426,000	55,000,000
			5층 이상	201	607,50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127,250,000	55,000,000
059.7100B	59B	1701동(1호) 1702동(1호) 1703동(1호)	2층	3	574,710,000	57,471,000	57,471,000	57,471,000	57,471,000	57,471,000	57,471,000	57,471,000	117,413,000	55,000,000
			3층	3	586,810,000	58,681,000	58,681,000	58,681,000	58,681,000	58,681,000	58,681,000	58,681,000	121,043,000	55,000,000
			4층	3	598,910,000	59,891,000	59,891,000	59,891,000	59,891,000	59,891,000	59,891,000	59,891,000	124,673,000	55,000,000
			5층 이상	54	604,960,000	60,496,000	60,496,000	60,496,000	60,496,000	60,496,000	60,496,000	60,496,000	126,488,000	55,000,000
059.1400C	59C	1701동(2호) 1702동(2호) 1703동(2호) 1704동(2호)	2층	4	569,230,000	56,923,000	56,923,000	56,923,000	56,923,000	56,923,000	56,923,000	56,923,000	115,769,000	55,000,000
			3층	4	581,210,000	58,121,000	58,121,000	58,121,000	58,121,000	58,121,000	58,121,000	58,121,000	119,363,000	55,000,000
			4층	4	593,190,000	59,319,000	59,319,000	59,319,000	59,319,000	59,319,000	59,319,000	59,319,000	122,957,000	55,000,000
			5층 이상	63	599,190,000	59,919,000	59,919,000	59,919,000	59,919,000	59,919,000	59,919,000	59,919,000	124,757,000	55,000,0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등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중요]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신청한 주택형별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층별, 주택형(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ws-thehue.com) 등으로 공급가격, 동·호 배치도, 주택형(타입)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타입)별 주거전용 및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 자격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계약자는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융자금(주택도시기금) 안내>**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주택도시기금) 안내>**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사업주체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은 입주시점에 별도로 계좌를 안내할 예정이므로 분양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중도금			
	잔금			

※ 분양대금 납부계좌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별 가상계좌 안내 및 확인방법은 당첨자발표일 이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가상계좌 예금주의 경우 관리계좌(모계좌)의 예금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입금 시 예금주는 세대별 동·호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계약금 계좌와 동일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701동 101호 계약자 홍길동 → '170101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까지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

■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기간 내 함께 진행하며, 공동주택 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택형(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 시	입주지정기간
59A	7,888,000	788,800	7,099,200
59B	7,555,000	755,500	6,799,500
59C	7,718,000	771,800	6,946,200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타입)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발코니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질, 동급 및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타입)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구 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 시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잔 금	공급금액의 90%	입주 시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으로 세대별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701동 302호 계약자 → '170103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상기 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공동주택 공급계약기간 내 함께 진행)
※ 본 아파트는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 공사, 발코니 확장 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타입)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옵션, 특화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위치류,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주택형(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통**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 품목 선택은 불가)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2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입니다.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창호	문틀(상부마감판, 문선, 목재공틀 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실외기실 문, 다용도실 도어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 내·외부 PL창호, 실외기그릴창
② 바닥	강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 마루귀틀, 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방수(방수 시공부위만 해당),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경량벽체(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벽 도장(발코니, 하향식피난구실, 실외기실)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장, 등박스, 반자돌림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소방관련 시설, 설비 및 환기시설, 스피커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인조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상콜,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벽 및 바닥방수,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렌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벽타일,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	석고보드,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가스배관 포함), 배기덕트
⑦ 조명기구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콘센트
⑧ 일반가구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⑨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보일러	발코니 난간, 설비배관,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소방감지기, 동체감지기, 에어컨냉매배관(거실, 안방), 세대환기시스템, 계량기류, 스프링클러 및 하향식피난구 등 소방관련시설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마감재 리스트 품목에 준합니다.(마감재 리스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공제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타입(약식표기)	59A	59B	59C
금 액	31,350,000	31,610,000	31,16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세대별 공급금액(공동주택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납부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타입(약식표기)	59A	59B	59C
금액	6,703,000	6,421,000	6,559,000

■ 마이너스옵션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 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 및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 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시행자 시공분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해야 하며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욕실 벽체는 콘크리트 벽체 및 조적벽체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벽지 시공부위에는 별도의 마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대출은행을 알선한 경우)이 불가할 수 있으며,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사유로 계약 취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6. 추가선택품목(유상/무상옵션)

■ 추가선택품목(유상/무상옵션) 안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타입)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및 설치위치 등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계약체결기간(추후 별도 안내) 내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및 내용, 납부일정 및 계좌, 제품상세내용 등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유상옵션 외 무상옵션 선택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 세대(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 제외) 해당 계약기간 내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 방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해당 무상품목을 임의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질, 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견본주택 또는 홈페이지(ws-thehue.com)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 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결정기간 이후 선택품목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옵션표 상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안정기(SMPS), 감지기, 배선기구, 스위치, 온도조절기,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무상옵션)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형(타입)별 개별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무상옵션)

대상 타입	구 분	선택옵션1	선택옵션2
전 타입	바닥마감재 선택	강마루	륨카펫
전 타입	가변형벽체 선택	침실1, 침실2 분리형	침실1, 침실2 통합형

※ 추가선택품목(무상옵션)은 전 세대(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 제외)가 추가선택품목 계약기간 내 선택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가변형 벽체 무상옵션 중 선택옵션2 선택 시 침실1, 침실2 사이 벽체가 미설치 되며, 목도어 및 각종 배선기구, 설비장치 등의 설치 위치는 분리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바닥 륨카펫 무상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륨카펫의 사양(규격, 색상, 재질, 패턴, 나누기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1)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공급금액		
			59A	59B	59C
시스템 에어컨	LG	2개소(거실+안방)	4,000,000	4,300,000	3,700,000
		4개소(거실+안방+침실1+침실2)	6,500,000	6,700,000	6,300,000
	삼성	2개소(거실+안방)	4,500,000	4,800,000	4,200,000
		4개소(거실+안방+침실1+침실2)	7,100,000	7,300,000	6,9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천장 냉매배관으로 시공,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아트월 간접조명 등 길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컨(무선)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거실, 안방) 미시공 등 기본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 이후 선택 취소 시, 기본제공 품목인 냉매매립배관의 시공은 불가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른 실 이외의 별도의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대별/평형별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마감공사 전 실내기 설치가 진행되는 품목으로, 설치된 제품의 제조년월이 입주시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제품명	59A	59B	59C	비고
인덕션 쿡탑	일반형(쿠쿠)	CIR-M302FB	300,000	300,000	300,000	중복하여 선택 불가
	고급형(삼성)	NZ63B5056AK	1,000,000	1,000,000	1,000,000	
	고급형(LG)	BEI3ANHLBIE	1,000,000	1,000,000	1,000,000	
전기오븐(쿠쿠) + 하부프라이팬 서랍		CMOS-A4410B	500,000	500,000	500,000	-
식기세척기(삼성)		DW80F71Y1SEW	1,100,000	1,100,000	1,100,000	-
빌트인 냉장고	냉장+냉동+김치+키큰장(인출장)	RR40C7995AP(우)/RR40C7895AP(좌) +RZ34C7965AP(우)/RZ34C7865AP(좌) +RQ34C7945AP(우)/RQ34C7845AP(좌)	6,400,000	6,400,000	선택불가	59A, 59B 선택가능
	냉장+냉동+김치	RR40C7995AP(우)/RR40C7895AP(좌) +RZ34C7965AP(우)/RZ34C7865AP(좌) +RQ34C7945AP(우)/RQ34C7845AP(좌)	선택불가	선택불가	5,800,000	59C 선택가능
	냉장+냉동+홈바형수납장	RR40C7995AP(우)/RR40C7895AP(좌) +RZ34C7965AP(우)/RZ34C7865AP(좌)	5,500,000	5,500,000	5,000,000	-

※ 전기오븐 유상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으로 시공되며, 하부프라이팬 서랍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인덕션 쿡탑 유상옵션은 선택에 따라 해당 제품이 설치되며,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미선택 시에는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되며,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되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사양의 냉장고장이 설치되며, 입주자가 개별 구매하는 가전제품의 규격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며, 제품의 색상 및 설치 순서(배치)는 별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59C타입은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냉장고장(상부장)의 규격은 타 평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은 선택에 따라 해당 가전제품 및 가구가 설치되며,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홈바형 수납장의 상부장 및 선반 하부조명은 가구 측면에 별도 스위치로 작동되며, 가구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안정기함이 상부장 뒤편에 설치됩니다.

3) 가구 및 마감재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59A	59B	59C	비 고
침실2 붙박이장	침실2 슬라이딩 붙박이장	2,000,000	2,000,000	2,000,000	-
현관특화	현관특화1 (3연동 슬라이딩 중문)	1,400,000	1,400,000	1,400,000	중복하여 선택 불가
	현관특화2 (3연동 슬라이딩 중문+신발장(도어 마감 변경+하부조명) +현관창고(도어 패턴 변경 및 가구판넬 추가)+현관청정시스템(에어샤워기+에어브러쉬))	2,600,000	2,900,000	2,700,000	
욕실특화	욕실1 (고급형 수전+고급형 액세서리+욕실 복합환풍기) 욕실2 (고급형 수전+고급형 액세서리+욕실 복합환풍기+컬러 샤워부스 프레임)	2,100,000	2,100,000	2,100,000	-
주방특화	주방특화1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사각 싱크볼+고급 주방 수전+주방상판 콘센트)	3,100,000	3,100,000	2,550,000	중복하여 선택 불가
	주방특화2 (주방 벽, 상판 세라믹 타일+상부 유리 플랩장+상부장 하부조명 +독립형 후드+사각 싱크볼+고급 주방 수전+주방상판 콘센트)	8,000,000	9,300,000	6,900,000	
주방수납특화	주방 홈바형 수납장	2,000,000	선택불가	선택불가	59A 선택가능
조명특화	조명특화1 (거실 우물천장 상하향 등+아트월 픽쳐레일 일체형 조명)	1,350,000	1,400,000	1,600,000	중복하여 선택 불가
	조명특화2 (조명특화1 + 실링팬)	1,700,000	1,750,000	1,950,000	
마감특화	마감특화1 (아트월 세라믹타일)	2,600,000	3,000,000	3,300,000	중복하여 선택 불가
	마감특화2 (아트월 및 웰컴월 세라믹타일+현관, 거실, 주방, 복도 벽체 시트판넬)	6,200,000	6,800,000	선택불가	
	마감특화2 (아트월 및 아트월연장벽 세라믹타일+현관, 거실, 주방, 복도 벽체 시트판넬)	선택불가	선택불가	8,200,000	
드레스룸 특화	3연동 슬라이딩 도어+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천장형 제습기	3,300,000	선택불가	2,500,000	59A, 59C 해당
	원 슬라이딩 도어+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천장형 제습기	선택불가	2,200,000	선택불가	59B 해당
바닥마감특화	바닥마감특화1 (전실 바닥 광폭강마루)	550,000	550,000	500,000	중복하여 선택 불가
	바닥마감특화2 (거실, 주방, 복도 바닥 에디톤 스톤)	1,650,000	1,650,000	1,500,000	
	바닥마감특화3 (거실, 주방, 복도 바닥 에디톤 스톤+ 침실 바닥 광폭 강마루)	1,900,000	1,900,000	1,750,000	

※ 침실2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시 붙박이장은 침실2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침실2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시 가구의 후면,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침실2 붙박이장의 하드웨어 사양(제조사, 규격, 색상, 디테일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의 제조사 및 제품의 사양(규격, 색상, 프레임,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사양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특화2 유상옵션 선택시 신발장 하부조명은 센서 작동 방식이 아닌 가구 내 별도 스위치로 작동되며, 유지보수를 위한 안정기함이 신발장 내부에 설치됩니다.
※ 현관특화2 유상옵션 선택시 현관 가구판넬 부위는 타입마다 상이합니다.
※ 주방 특화 유상옵션은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59A타입 주방 수납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주방 팬트리 가구도어 및 시스템가구(포스트형)가 제공됩니다.
※ 주방 홈바형 수납장의 상부장 및 선반 하부조명은 별도 스위치로 작동되며, 가구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안정기함이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2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및 스위치는 본공사 시 사양(제조사, 형태, 색상, 규격, 디테일,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2 유상옵션 선택 시 상부장 하부조명은 별도 스위치로 작동되며, 가구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안정기함이 설치 됩니다.
※ 주방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적용되는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타일의 색상 및 패턴, 나누기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주방 벽은 도기질 타일, 주방 상판은 인조대리석(MMA급)으로 시공됩니다.
※ 주방 특화2 유상옵션 미선택 시 침니형 렌지후드 및 가구도어가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일반 싱크볼이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벽부형 액세서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조명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아트월 픽처레일 일체형 조명의 제품 규격 및 조명박스 깊이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링팬은 별도 리모컨으로만 작동되는 제품입니다.
※ 마감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적용되는 세라믹타일 및 시트 판넬의 사양(규격, 색상, 패턴, 나누기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 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아트월은 포세린타일이, 거실·주방·복도 벽체에는 벽지가 시공됩니다.
※ 마감 특화1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 아트월만 해당되며, 복도 웰컴월 및 아트월연장벽에는 세라믹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마감 특화 유상옵션의 시트 판넬의 시공 범위는 현관 특화 유상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드레스룸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슬라이딩 도어의 제조사 및 제품의 사양(규격, 색상, 프레임,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 사양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및 제품의 사양(규격, 색상, 포스트 형태, 하드웨어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커튼박스 내부 마감은 벽지로 시공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반조명의 안정기함이 설치되며, 설치 제품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화장대 및 드레스룸 가구도어가 설치되며 드레스룸 내부에는 시스템가구(포스트형)가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천장형 제습기는 본공사 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 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전실 바닥은 기본 강마루로 시공되며, 기본 강마루의 제조사 및 사양(규격, 색상, 재질, 패턴, 나누기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 특화2 유상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에디톤 스톤(마루)의 사양(규격, 색상, 재질, 패턴, 나누기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 특화1,3 유상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광폭 강마루의 제조사 및 사양(규격, 색상, 재질, 패턴, 나누기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침실 입구 바닥 부위에 재료 분리대가 설치되며, 단차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금액, 납부계좌, 납부일정

구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 시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잔금	공급금액의 90%	입주 시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으로 세대별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701동 302호 계약자 → '170103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상기 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주금 납부, 중도금대출 관련 유의사항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잔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 선납시점의 선납할인율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사업주체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유이자 조건(대출이자 계약자 직접 납부)으로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개인의 신용불량 등 중도금 금융대출이 불가한 경우나 개인사정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융기관 선정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 본인 자금으로 직접 해당 납기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이율이 가산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인지세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 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 사정, 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 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 불가 또는 대출 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 시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LTV에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Ⅱ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경기도, 기타지역 거주자 등으로 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11.19.)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	30%	·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25.11.19. 이전부터 계속하여 **남양주시** 거주 ('25.11.19.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26.05.19.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6.05.19.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최소물량(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경기도→타지역 순으로 배정합니다.

※ 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이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11.19.)	① 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단, 우선공급 물량에서 경쟁 발생 시 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우선공급 낙첨자가 잔여물량에서 재경쟁 시 지역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 지역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6개월 미만)**·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6.12.08.)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철거주택 소유자 · 협의양도인 · 지역균형발전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세대주 변경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세대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각각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 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해당 조항의 소명자료로 해당 건물이 속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사업주체가 인정하는 확인원에 한함)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에는 반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함'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외(발급기관 자체 양식에 따른 해당 문구 미포함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하며, 소명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에는 불인정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0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중요)**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자산 관련 소명자료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발급서류, 공공기관의 확인서 등 공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계약이 불가하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작성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셔야 청약통장 재사용(일정기간 이후)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4항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해당 특별공급에 출산특례를 사용한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직접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검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3">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215,500천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건 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r><td colspan="2">시설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td></tr>
</table>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①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②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건물+토지)	**237,050천원 이하**	**258,600천원 이하**	**215,500천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고
자동차	**49,960천원 이하**	**54,510천원 이하**	**45,420천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단,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 단순 열람용 서류 인정불가
- 온라인 조회 시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6년식 자동차를 2025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중요)**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 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우선공급(1순위자)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생아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배점 (우선공급,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2,807,397	14,963,743	15,855,875	16,840,647	17,825,420	18,810,19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일반공급·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일반공급,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단순 연락두절 인정 불가)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중요)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개인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검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계약이 불가하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작성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셔야 청약통장 재사용(일정기간 이후)이 가능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휴직자 본인의 정상근무기간 소득을 조회·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소득초과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0. 공통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 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예비배우자 포함)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중요] 동·호수는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합니다.**

1. 이주대책 대상자

■ **신청자격**

- **이주대책 대상자 :**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로부터 '왕숙 한신더휴 센텀(남양주 왕숙 A17BL)'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11.30.(월) 09:00 ~ 17:3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인증서를 소지하고 청약홈(www.applyhome.co.kr)에 접속 후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신청)

■ **당첨자 선정방법**

- **[중요]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타입)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본 유형의 경우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11.30.(월) 09:00 ~ 17:30)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의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가에(당해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 대지지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전 확정받은 주택형(타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주택형(타입)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본 아파트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제한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공급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게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게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요 없음

■ **유의사항**

- 해당 시·도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11.30.)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협의양도인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의 협의양도인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11.30.(월) 09:00 ~ 17:3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인증서를 소지하고 청약홈(www.applyhome.co.kr)에 접속 후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신청)

■ **유의사항**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대상자 또는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동일 세대 내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상속 등에 따라 공급대상자 지위를 승계한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협의양도인 주택 대상자 선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이후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타입)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은 특별공급 주택형(타입)별 전체 공급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Ⅳ. 신청 시 확인사항 –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비대상자의 경우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반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되신 경우는 일반공급 신청자 자격으로 자격검증이 진행되오니 일반공급의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4. 철거주택 소유자(기관추천) 특별공급

구분	신청자격
철거주택 소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왕숙 한신더휴 센텀(남양주 왕숙 A17BL)' **공공분양주택의 철거주택 소유자(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11.30.(월) 09:00 ~ 17:3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인증서를 소지하고 청약홈(www.applyhome.co.kr)에 접속 후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신청)

■ 유의사항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대상자 또는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동일 세대 내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상속 등에 따라 공급대상자 지위를 승계한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중요]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비대상자의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반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되신 경우는 일반공급 신청자 자격으로 자격검증이 진행되오니 일반공급의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지역균형발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5.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현재 **수도권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다문화가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담당기관 : 장애인(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철거민(남양주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북한이탈주민(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국방부 국군조직 국군복지단), 중소기업근로자(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다문화가족(경기도청 이민사회지원과)

■ **기관추천 배정세대수**

[단위 : 세대]

타입(약식표기)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지자체철거민	사업지구 철거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다문화가족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9A	4	3	1	1	5	2	1	1	2	1	12	33
59B	1	1	-	1	2	-	-	-	-	-	3	8
59C	1	1	-	1	2	-	-	1	-	-	3	9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단, **일반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되신 경우는 일반공급 신청자 자격으로 자격검증이 진행되오니 일반공급의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11.30.(월)(09:00~17:30))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중요]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지역균형발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11.20. ~ 2026.11.19. 기간 중 출생자)인 미성년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다자녀가구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의 **시·군·구가 속한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나머지 50%는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 공급물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의 **시·군·구가 속한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나머지 50%는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사람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중요]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0명	0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해당없음	0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없음	0	
해당 시·도 **(수도권)**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미거주	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개설한 날부터 산정)**
		해당없음	0	

(1), (2)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수도권)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노부모부양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양'이라 함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 청약이 적발될 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 공급물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사람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중요]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신청자 본인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8.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생애최초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생애최초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도 없는 신청자가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 공급물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 공급물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중요]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신청자 본인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9.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11.19.~2026.11.19.에 속한 자)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변경한 경우,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신혼부부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신혼부부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 등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예비신혼부부 제외)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및 혼인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 공급물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 공급물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출생)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1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참고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해당없음	0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0명	0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개설한 날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 초과 5년 이하	2	
		5년 초과 7년 이하	1	
		7년 초과	0	
바.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 3세 미만)	3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2세 초과 4세 이하(만 5세 미만)	2	
		4세 초과 6세 이하(만 7세 미만)	1	
		해당없음	0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중요]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신청자 본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10.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및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직인날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자녀 양육사실을 추가로 증명(공적서류에 한함)할 수 없는 경우 부적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신생아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신생아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 공급물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 공급물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1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참고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해당없음	0	
나. 미성년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개설한 날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미성년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중요]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신청자 본인이 **신생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11.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일반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우선공급 (1순위자)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분**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 공급물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Ⅱ. 신청기준의「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 공급물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및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직인날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자녀 양육사실을 추가로 증명(공적서류에 한함)할 수 없는 경우 부적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타입)별로 **남양주시(1년 이상 계속 거주), 경기도(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수도권(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중요]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Ⅳ 신청 시 확인 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 조회기준일 입력→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2. 전매 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6.12.08.)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의 경우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제출, 신생아 우선공급·신생아 특별공급 및 출산특례 사용자의 경우 자녀양육사실 증빙서류 등),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는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3.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 제3호)	10년

4.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타입)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 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특별공급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ws-thehue.com)를 통해 별도 통보 예정이며, 개별 안내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제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타입)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접수 또는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또는 결번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타입)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타입)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타입)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타입)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타입)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타입)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Ⅱ. 신청 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Ⅴ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및 장소
특별공급	• **이주대책 대상자** • **협의양도인** • **지역균형발전**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철거주택 소유자 포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2026.11.30.(월)**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10:00 ~ 14:00)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9번지)
일반공급	• **1순위**	**2026.12.01.(화)**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2순위**	**2026.12.02.(수)**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 홍보자료, 견본주택, 홈페이지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타입)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는 각 주택형(타입)별로 배정 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타입)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이주대책 대상자,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협의양도인 · 지역균형발전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Ⅵ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u>인터넷 신청을 원칙</u>으로 합니다.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청약홈" 앱을 사전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구비서류 제출을 완료한 분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저축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상기 필요서류는 참고사항이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해당 은행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2.08.(화) ~ 2026.12.17.(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2.0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해 사업주체가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엄격하게 처리**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 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 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 추후 홈페이지 별도 안내)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정당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정당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2026.12.08.(화)	2026.12.11.(금) ~ 2026.12.13.(일) 10:00~17:00	2027.02.15.(월) ~ 2027.02.17.(수) 10:00~16:00	추후 일정 고지 당사 홈페이지(**ws-thehue.com**)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왕숙 한신더휴 센텀 견본주택(**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9번지**) **※ 사전방문예약제 운영** **- 당사 홈페이지(ws-thehue.com)**		

※ 당첨자 및 공급계약 체결 예약 방문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당첨자 별도 안내 혹은 '왕숙 한신더휴 센텀' 홈페이지(ws-thehue.com)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의 일정이 변동될 시에는 '왕숙 한신더휴 센텀' 홈페이지(ws-thehue.com)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계약일 등 예비입주자 일정은 추후 **'왕숙 한신더휴 센텀' 홈페이지(ws-thehue.com)**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상기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제출 기간이 상이하므로 추후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의 경우 해당 기간 별도 안내)는 상기 해당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호추첨 일정에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접수기간 상이)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로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소명기간 내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소득·자산 등 자격 조회 불가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특별공급(지역균형발전, 협의양도인, 철거주택소유자,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 정당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별표(*)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이주대책 대상자 ·철거주택 소유자 ·협의양도인 ·지역균형발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청약Home(www.applyhome.co.kr)] •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유형 및 이주대책대상자, 협의양도인,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신청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이므로 제외합니다] • 인터넷 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한 경우 생략
	○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조회용	본인 및 세대원	**※ '왕숙 한신더휴 센텀'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서류접수기간 내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제출처 : 한신공영 컨소시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발급형태 : '선택 발급'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체크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상세"로 체크(용도 및 목적 : 민간기관 제출용)
		○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과거 이력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 각각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출산특례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모든 당첨자 필수 제출**
		○		(예비)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필수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협의양도인 및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개명 전·후 모두 동일기간으로 지정) 모두 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나, 출산한 자녀가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의 경우) ※ 임신증명서류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임신확인서 불인정**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출산특례 적용 대상자 포함)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성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서류제출기간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출산특례 관련]**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한 경우 **필수 제출**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유효한 번호가 아니거나 부여받지 못한 경우,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주택소유, 소득, 자산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자격검증 불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견본주택에 비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과거 이력 포함)**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세대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분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인정받고자 하는 출산 자녀가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임신확인서 불인정**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제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 표시한 전체출력 내역 제출 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발급(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의 내역) - 열람이 아닌 '발급'요구서로 신청 후 발급(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반드시 체크 - 기간 : 3년 이상의 내역이 표시되도록 발급(2023.11.19.~2026.11.19.) - 필요항목의 경우 '전체항목'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주민등록표등본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개명 전·후 모두 동일기간으로 지정) 모두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과거 이력 포함)**까지 포함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과거 이력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전부),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주체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예비신혼부부 서약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접수장소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비)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세대원이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예비배우자의 등본 상 세대원이 등재된 경우 관계 확인 위한 필수 제출(등본 상 관계 인정 불가)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자녀	• 1순위자로서 자녀를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른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인정받고자 하는 출생 자녀가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임신확인서 불인정**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청약자용)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왕숙 한신더휴 센텀' 홈페이지에 게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9> 참고)**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9>**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아래 <표9> 참고**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과거이력 포함)**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인정받고자 하는 출생 자녀가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임신확인서 불인정**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성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서류제출기간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하여 **필수 제출**('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임신확인서 불인정** ※ 또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출생증명서	본인	• 2세 미만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 2세 미만 자녀가 입양아인 경우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제출처 : 한신공영 컨소시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예비배우자의 경우 당첨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반드시 "상세"로 설정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발급형태 : '선택 발급'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체크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상세"로 체크(용도 및 목적 : 민간기관 제출용)) "일반"으로 발급 시 사업주체는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과거이력 포함)'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과거이력까지 모두 포함)'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과거이력 포함)**,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세대원 각각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신청자는 적법한 자격검증절차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9>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사본 불인정)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포함)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납부내역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연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 **(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②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납부내역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연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 **(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①, ②, ③ 해당직장/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급신청자는 적법한 자격검증절차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 및 소득세 납부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정당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별표(*)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원	**※ '왕숙 한신더휴 센텀'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서류접수기간 내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제출처 : 한신공영 컨소시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상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발급형태 : '선택 발급'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체크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상세"로 체크(용도 및 목적 : 민간기관 제출용)
		○		배우자 및 세대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과거 이력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 각각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신생아 우선공급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필수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개명 전·후 모두 조회기간 동일 지정) 모두 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인 경우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공고일 현재 임신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임신확인서 불인정** ※ 또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포함]**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포함]** 2세 미만 자녀,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성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서류제출기간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하여 **필수 제출**('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유효한 번호가 아니거나 부여받지 못한 경우,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주택소유, 소득, 자산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자격검증 불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제출처 : 한신공영 컨소시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반드시 "상세"로 설정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발급형태 : '선택 발급'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체크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상세"로 체크(용도 및 목적 : 민간기관 제출용)) "일반"으로 발급 시 사업주체는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과거이력 포함)'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과거 이력까지 모두 포함)'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과거이력 포함)**,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세대원 각각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신청자는 적법한 자격검증절차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을 개명 전·후 모두 동일기간으로 지정) 모두 제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상기 단신부임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급신청자는 적법한 자격검증절차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9.)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검증서류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 완료하여야 함)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증(현금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제출처 : 한신공영 컨소시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추가제출 불필요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금액 : 15만원
		○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양식 : 왕숙 한신더휴 센텀 홈페이지 (ws-thehue.com)에서 다운로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이외)	○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제출처 : 한신공영 컨소시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상기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은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제출한 당첨자(예비입주자)만 제출 가능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사업주체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청약, 당첨,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입주자 모임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및 그 관계자에게 공급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포함)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유이자 조건(대출이자 계약자 직접 납부)으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의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부적격 의심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자격검증 관련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자로 관리합니다.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 소득·자산보유기준 등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또는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 등 제외)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 선정을 제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7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폭염, 한파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설계도서와 상이한 지질여건,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및 신설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시니어클럽(경로당), 키즈클럽(어린이집), 북클럽(작은도서관), 독서실, 토이라이브러리(장난감도서관), 소셜라운지(동아리실), COMMUNITY CAFÉ(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센터(GX룸 포함), 실내골프센터(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포함), 계절창고, 그로잉센터(공동육아방), 스카이라운지, 주민회의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유의사항**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해당기관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복리시설, 각 주택형(타입)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상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합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이상	2.7M 이상
지하 2층	2.3M 이상	2.3M 이상

4.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65세 이상인 사람,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아래의 서류 제출 및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주방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거실	세대단말기(월패드) 높이조정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야간센서등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 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나,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며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시 유상옵션 항목 중 주방특화, 욕실특화의 선택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27.02.15. ~ 2027.02.17.) 내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필요서류**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신분증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1부 (자격검증 제출서류와는 무관 추가 발급 필수)

5. 지구 및 단지 여건

※ 다음과 같은 설계 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공통	일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타입)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타입)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타입)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견본주택 내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분양 홈페이지 확인가능)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각종 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시공과정 중 관련 법령에 의거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주동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명칭은 '왕숙 한신더휴 센텀'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펫네임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등에 산입될 예정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주 이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지면적 및 지분 감소에 따른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상의 사유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의 형태 및 위치, 마감,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및 축사·공장 등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단지공사 및 건축공사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모형도의 단지 출입구 및 차량게이트 설치 위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설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을 요하는 사항(동질, 동급 및 동가 이상의 자재 선정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동의 및 승인에 대한 의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공급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주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흙막이 등의 가시설 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 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일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설계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위치 및 면적, 개소, 형태 등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단지명,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재활용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지구 여건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로 승인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도로선형 변경,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의견, 상위계획 변경, 민원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는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단계별 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일정이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착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한 계획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생활편익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등은 해당 기관 여건에 따라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설별 추진계획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지구 내에는 통합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임대, 민간분양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에너지공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관통 송전철탑 및 선로를 지중화에 따른 전기공급설비(케이블헤드) 1개소 및 변전소(2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구 내 12개소의 주유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구 내 왕숙천, 사릉천, 용정천이 위치하고 문화공원 및 근린공원내 홍수유출 저감을 위한 유수지 6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구 북측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가 위치하고 있어 해당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소음, 분진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도로 및 녹지 등 상부에는 도시기반시설인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지역난방 관련 지상기기,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신호등 등), 소화전 및 도로교통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시설물에 대해 이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 경춘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경춘선, GTX-B 및 9호선 신설역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와 별개 사업으로 철도공사 일정에 따라 개통시기가 연기될 수 있으며, 공사·운영 등에 따라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외 서쪽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확정된 철도시설, 도로시설, 환승시설 등은 국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동측으로 국지도 86호선, 남측으로 국도46호선, 북측으로 국지도 98호선이 인접하고, 경춘선 철도(지상)가 지구를 관통하고 있으며, 국도47호선 지하화 공사 등에 따라 소음, 진동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남측(경춘선 남측)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약 120만㎡) 지정 예정으로 향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유치업종 및 사업계획 등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 지구 내 수도권광역상수도 3개 노선(3,4,5단계)이 매설되어 있어 유지관리를 위한 수도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구 내 법정보호종(맹꽁이 등)의 대체 서식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 제4호 문화공원 내 남양주시 보호수(경기-남양주-46 1982.10.15.)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 지구 북서측 일원 남양주 동관댁(국가민속문화재 제129호) 입지에 따라 사업구역내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 4구역 일부 저촉되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시 계획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남측 인근에 진관산업단지 및 진건푸른물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북측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가 위치하고 있어 해당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소음, 분진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는 사업기간이 2032년 03월로 계획되어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성공사 일정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단지공사 및 건축공사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남양주왕숙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전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까지 하천 조성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지구 외부 유입수의 수질에 따라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 시설은 지구 계획(개발 및 실시 계획)의 인·허가 변경,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 설립 시기 조정 및 설립 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개교 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고, 입주 시 지구 내 학교 개교 지연될 경우 사업 지구 인근 학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인근 동원훈련장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 및 기반시설	•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형도 및 CG에 표현된 단지 외부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보행자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경사도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 일부 부위에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남양주왕숙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남측에는 중학교용지, 초등학교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고, 동측에는 수변공원 및 유치원용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인접대지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난간, 옹벽 및 조경석 등이 추가로 계획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수변공원 및 사능천이 연접해 있으며, 단지 서측으로 연결녹지 및 자족복합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table>
<tr><td rowspan="6"></td><td></td><td>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교통소음 저감대책으로 서측 및 남측 도로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사항으로 시행사 및 시공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교통소음 저감대책으로 단지 서측 도로는 일반저소음포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사항으로 시행사 및 시공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단지 외부 공공기반시설(수변공원, 문화공원, 사능천1보도교, 연결녹지, 공공공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설치 및 관리, 지자체 협의 하는 사항으로 시행사 및 시공사와 관련이 없습니다.</td></tr>
<tr><td>어린이집</td><td>•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379세대로,「주택법」제35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의 복리시설 내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379세대로,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동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500세대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td></tr>
<tr><td>다함께 돌봄센터</td><td>•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379세대로,「주택법」제35조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의 복리시설 내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미설치됩니다.</td></tr>
<tr><td>교육</td><td>■ 학교설립 계획 및 통학 관련
<table>
<tr><th>학 교</th><th>위 치</th><th>학교명(가칭)</th><th>개교시기(예정)</th><th>관할 교육지원청</th></tr>
<tr><td>유치원</td><td>유7</td><td>왕숙7유</td><td>2029년 03월</td><td rowspan="4">경기도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td></tr>
<tr><td>초등학교</td><td>초11</td><td>왕숙11초</td><td>2029년 03월</td></tr>
<tr><td>중학교</td><td>중2</td><td>왕숙2중</td><td>2029년 03월</td></tr>
<tr><td>고등학교</td><td>고1</td><td>왕숙1고</td><td>2029년 03월</td></tr>
</table>
• 해당 블록에서 유발되는 초등학생은 '(가칭)왕숙11초'로 배치 예정이며,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계획 변경 및 여건에 따라 통학구역은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블록에서 유발되는 중학생은 남양주왕숙지구 내 신설 중학군에 배치 예정입니다. 다만, 중학군(구)는 개교 전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되는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블록에서 유발되는 고등학생은 지역 내 모든 고등학교(일반계)에 지원 가능합니다.(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
• 학교 개교 시기 및 학생 배치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본 지구의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신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 설립(개교)시기 및 학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분양홍보물(카탈로그, 각종 광고지)</td><td>• 각종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현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변경) 도면을 기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줄눈,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단지 시설물 등이 분양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 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CCTV는 보안용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는 견본주택 소방 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설비는 인허가 기준에 따라 설치됩니다.
• 일부 평면의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 대비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시공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장, 주방가구, 침실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기타사항</td><td>•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견본세대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특화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분양계약체결 시 변경 수락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수락해야 합니다.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날개벽의 폭, 길이, 높이 등), 각동 출입구 등의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문주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시니어클럽(경로당), 키즈클럽(어린이집), 경비실 등)의 기초구조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td></tr>
</table>

■ 단지 유의사항

단지	공통사항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한신더휴 디자인 및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중이며, 당 현장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입면디자인, 색채, 패턴, 줄눈, 몰딩, 옥상난간, CI, BI 브랜드 로고, 경관조명, 기타 장식물의 디자인 및 형태, 마감사양 등이 시공사 디자인 기준으로 변경 시공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동의해야 합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 및 동가 성능 또는 동급 및 동가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발코니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물건의 적치 등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하향식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완강기 설치 예외에 해당하여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필로티 상부세대는 피난을 위하여 완강기 설치 예정임)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가로수,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공공시설물, 문화 및 지원시설, 학교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일정에 의하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신탁사, 시공사의 타 현장 아파트 등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사업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세대 층간바닥구조의 재질, 두께, 사양, 제품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성능등급은 표준실험동 등에서 관련기준 절차에 따른 등급으로 실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사후확인제도, `22.08.04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건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방법 준용)에 따라 확인한 성능등급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견본주택 공개 후 당해 택지지구 또는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부대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당해 주택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추가 또는 교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동출입구 무단차 진입으로 1층세대가 GL+300mm 계획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세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별 필로티 및 동출입구의 유무, 사이즈, 위치 등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경관에 해당하는 조명, 경관계획은 관할청의 규제사항에 저촉 또는 권고될 경우 계획이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설비, 태양광설비,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에(동별 위치 상이) 벽부형 사인물 및 피뢰침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미관저하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이동통신설비 안테나가 주차장에만 계획되어 있으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 내 지하 1층 PIT 구간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통신품질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파라펫 높이,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식재, 시설물, 재료 및 패턴 등의 포장계획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내 도로,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한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 등의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경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장비(안테나, 중계기 등)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양호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동, 라인에 따라 속도, 인원, 층수, 대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 및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로 진입하는 비상차량 동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고,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지하에 오배수용 펌프가 설치되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작동 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펌프 가동에 따른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시스템에어컨 사용 시 응축수 발생으로 인한 동 지하 집수정의 펌프가 작동하여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 및 옥상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 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 수전 및 배수가 설치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와 배수 물막힘 현상 등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일부 하부세대의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의 승강로 피트내부에 엘리베이터 기계 구동부가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 난간은 관계 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 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의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에는 수목 식재가 배제되며, 이에 따라 인접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관련 법규의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조경면적 및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 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아파트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이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입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주변 단지, 녹지, 도로 등의 면적 및 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출입구 일부 구간 보차혼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 시 내용 확인하시어 사고 발생에 유의하시고, 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 내·외 시설물(문주,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시설, BI 조명 등)에 의해 특정 세대가 자동차 전조등, 야간조명 등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필히 계약 시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공용부 유의사항	• 주동의 필로티 공간은 보행통로 또는 공용부분으로 개인이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 일부에 설치되는 홀, 복도 등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구조 및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동 지하 피트내부에는 배수를 위한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며 펌프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세대별 동체감지기는 1,2층, 최상층의 외부 창호 전체, 기준층은 거실에만 설치됩니다. • 각 주동 지붕층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위치, 설치 각도 및 설치 면적, 장비의 구성 등 세부사항은 태양광설비의 전력생산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치될 예정으로 실시공시 도면 및 모형(CG)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장비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부 PIT층 제연휀룸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이 1개동 당 1개소씩 지하 1층 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세부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출입구의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이 있는 자동문 슬라이딩&스윙도어 및 픽스도어이며, 강화유리(안전유리)가 적용됩니다. • 각 동 지붕층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경관조명 작동 및 운영, 유지보수 등 관련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제연휀룸 DA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창호의 위치 및 지상에 설치되는 제연휀룸 DA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부 계단실 창호는 실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창호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된 규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각 동 옥상 및 옥탑층에 설치되는 의장용 구조물, 각종 설비 및 부속시설물 등은 강풍 등 외부 환경요인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상층 및 인접 세대에 생활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운행 및 기계장치 작동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최상층 및 승강로·승강기 기계실과 인접한 세대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동 계단실 창호는 전체 고정 창호로 설치되나 3개 층마다 1개소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전실 창호는 전층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단지 관련 비상차로는 비상시에 도로 점용이 필요할 수 있고 도로 점용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보도 포장의 패턴 및 색채, 선형 등은 단지 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모형 및 CG에 표현된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여건	• 최고층수는 주동의 최상층 층수로,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와 차이가 있으며, 지상 9층~29층 규모입니다. • 지붕은 평지붕으로, 지붕층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며, 옥탑부 장식 구조물이 설치되고 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준공 시 당 사업장 부지의 확정 경계 및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미술장식품의 위치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그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인허가청에서 주관하는 심의사항입니다. • 단지 내 배치 구조 및 층수에 따라 일부 세대를 제외한 전 동은 이삿짐 차량 접근 불가 또는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층 주동 진입은 동별 필로티 또는 로비로 진입하는 구조이며, 주동 위치에 따라 진입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견본주택에서 모형도, 도면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층 1701동, 1702동, 1703동(1,2,3호 라인), 1704동(1,2,3호 라인) 주동 진입은 필로티 구조로 층고는 1701동 5.3M, 1702동 6.3M, 1703동, 1704동 3.25M이며, 필로티 천장고는 2.3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는 구조상 외기에 직접 면하는 구조로 위층 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 있는 선큰이 계획되었으며,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 펌프실/저수조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근린생활시설, 재활용품보관함, 자전거보관소, DA, 외부계단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동 및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필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대지(주출입구 및 차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자, 방문객 및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주출입구는 아파트 차량 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을 공동으로 출입하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모형, 도면 등을 참고하시고 양지하신 후 계약 및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근린생활시설 전용공간이 별도로 위치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모형, 도면 등을 참고하시고 양지하신 후 계약 및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획상 도로 레벨 극복을 위하여 단지 내부에 완만한 경사가 존재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인입개폐기 및 상가용 변압기),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주변 도로보다 낮게 위치하여 채광 일조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관련하여 각 동 옥상에는 태양광패널이 설치되며, 설치용량, 범위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시설 및 공용공간, 진출입 동선 등의 공동 이용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 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 및 유무에 따라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주요 개소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사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건물의 형태, 세대수, 세대 면적 및 층수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 속도 및 사양에 차이가 있으며, 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차의 진입, 회전, 정차 등을 위한 협의에 따라 조경 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조경 및 기타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에 의해 저층세대 전면 식재가 불가할 수 있어 이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변경 사유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단지내 조경공간과 시설물(녹지, 놀이터, 휴게 공간, 쓰레기보관소 등) 등으로 인한 소음이나 냄새,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과 이용자에게 있으며, 입주민의 편의 및 자의에 의하여 단지내외 식재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배치 변경하였을 시, 이는 민원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조경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포장 등 포함), 바닥포장,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면적, 위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수량 등이 현장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종류, 높이 및 굵기 등은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경시설 사용에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사항입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운동시설 등 조경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 선형, 폭과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기탑 등 구조물의 크기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조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기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계획(식재, 시설물, 포장, 부대시설) 및 대지조성 계획(법면 또는 사면, 석축, 옹벽, 배수, 포장)의 위치, 디자인, 색채, 수량, 종류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수목 유지관리는 입주자 관리사항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발생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여건 및 유지관리 안정성 여부에 따라 추후 소나무류는 대체 수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커뮤니티공간(놀이터, 수공간, 휴게공간 등)의 외부커뮤니티 공간은 단지 내 기능 강화 및 공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향후 인허가 승인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의 세부위치, 규모, 형태 및 구성이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추후 하자를 주장하거나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문주	• 문주 형태, 높이, 폭,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 계획 및 외관개선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문주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습니다. • 문주는 단지 주출입구에 1개소 설치됩니다.
	외관/ 조명	• 본 단지의 BI, CI 및 각종 브랜드 로고 표기는 일부 주동 상단부 벽부 또는 최상층 위 파라펫 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상세설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건물외관(옥탑, 주동출입구), 아파트의 외부색채/패턴, 줄눈 패턴, 주현관, 필로티(내외부) 등은 분양 이후 세부디자인 완료 시 확정되며,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동 주출입구 게이트 디자인은 위치에 따라 석재 돌출치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게이트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출입구 디자인 벽체에 설치되는 브랜드의 명칭, 로고의 디자인, 규격,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하여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통신시설,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패널 등의 시설물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동 저층 외벽부 마감은 1701동 2개층, 1702동, 1703동, 1704동 3개층 석재이며, 1701동은 3층 이상, 1702동, 1703동, 1704동 4층 이상은 수성페인트가 기본 마감재입니다. (코어부 외벽 마감은 1701동 2개층, 1704동 3개층 석재이며, 이외 전체 수성페인트 마감임) • 석공사에 쓰이는 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는 천연석 특성 또는 제품 간 차이로 인하여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자료(모형, CG 등)에 표현된 옥탑 디자인 구조물의 규격, 기둥의 위치/크기, 간살 등의 규격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표현으로 실시설계 및 구조계산에 따라 세부규격이 결정되므로, 분양 홍보자료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보안등, 수목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조명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비용 일체(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수목 등 및 기타 조명에 의하여 야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	• 휀룸,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휀룸,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와 인접한 세대에서는 지하층 냄새(매연 포함) 및 소음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 또는 인·허가조건에 맞춘 수량의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저층 일부 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나 개수는 상이하며, 디자인 및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관리사무소(MDF, 방재실 포함), 경비실, 시니어클럽(경로당), 키즈클럽(보육시설), KIDS STATION(키즈스테이션), 클럽더휴(피트니스센터(피트니스, GX룸 포함), 실내골프센터(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포함), 토이 라이브러리, 소셜라운지, 북클럽(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회의실), GREEN CAFE(그린카페), 재활용품보관소, 탑라이트, DA, 근린생활시설 등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재활용품보관소, 펌프실, 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탑라이트, 제연휀룸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는 1702동 1,2호 라인 정면부에 설치 될 예정으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상세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출입구 및 경비실, D.A, 구조물, 저층부 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내부 도로 포장재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기타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1701동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 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인접부에 별도의 재활용품보관소가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기된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는 예정 위치를 표기한 것으로 실제 시공될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와 다를 수 있으며, 관련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그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인허가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702동 옥상에 TV공청 안테나 설치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상시 막혀있는 구조로 이동을 통제하며, 비상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1701동 정면부 인근에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장비 설치로 인하여 소음/진동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는 지상에 위치하며, 지하주차장 출입은 아파트와 공동으로 출입하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으며, 모형, 도면 등을 참고하시고 양지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구획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레벨 차이로 인해 경사가 일부 발생하며 계약 전 관련 도면, 모형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전용 재활용품보관소는 1701동과 근린생활시설 사이에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 세대는 냄새 및 시각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외부 대지에 물건의 적치, 시설물 적치, 영업 등을 위한 대지의 사용 및 점용은 불가합니다.
- 인접 도로의 계획 및 공사 환경 변화로 근린생활시설 전면부 및 접합부 레벨, 경사로, 난간 및 화단 등이 변경 또는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 부대복리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내, 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부대시설의 세부 위치는 견본주택에 확인하시고,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 면적은 사업계획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설계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면적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키즈클럽(어린이집)	지상 1층 232.33㎡	지상 1층 239.69㎡	지상 1층 증)7.36㎡
북클럽(작은도서관), 독서실, 소셜라운지, 토이 라이브러리	지상 1층 458.24㎡	지하 1층 458.24㎡ 지상 1층 6.84㎡ (합계 465.08㎡)	지하 1층 증)6.84㎡
피트니스센터	지하 1층 211.78㎡	지하 1층 211.78㎡ 지상 1층 3.16㎡ (합계 472.42㎡)	지하 1층 증)3.78㎡
실내골프센터	지하 1층 253.70㎡	지하 1층 253.70㎡ 지상 1층 3.78㎡ (합계 257.48㎡)	지하 1층 증)3.78㎡
주민회의실	지하 1층 31.67㎡	지하 1층 31.67㎡ 지상 1층 0.47㎡ (합계 32.14㎡)	지하 1층 증)0.47㎡
계절창고	지하 2층 215.00㎡	지하 2층 350.90㎡	지하 2층 증)135.90㎡
지하주차장	지하 2층 8,551.36㎡	지하 2층 8,457.09㎡	지하 2층 감)94.27㎡

- 상기 면적 변경에 따라 세대별 기타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사용검사(준공)시 일부 증감될 수 있으며, 세부 구획 및 면적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협의에 의해 커뮤니티 등 부대시설의 관리주체가 분리운영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됩니다.
- 남측 주출입구에 문주가 1개소 설치되며, 문주의 형상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주출입구 인근에 경비실이 설치됩니다.
- 1701동과 1702동 사이 지하1층에 지하 주민공동시설로 내려가는 선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선큰에 인접한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의 창호는 시공여건 및 환경개선(선큰 구배형성, 물들이침, 누수 등)을 위하여 하단 턱 등의 높이 및 창호의 크기가 조절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큰과 인접하여 클럽더휴(피트니스센터(피트니스, GX룸 포함), 실내골프센터(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포함), 토이 라이브러리, 소셜라운지, 북클럽(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회의실) 등이 설치됩니다.
- 홈페이지, 분양 카탈로그, 견본주택,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 CG의 내부 구조,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세부 시설의 명칭, 시설물, 인테리어 계획, 내외부 마감재, 집기 및 비품 등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701동 서측에 KIDS STATION(키즈스테이션)이 설치됩니다.
- 1701동 지상1층 1호 라인에 그로잉센터(공동육아방)이 설치됩니다.
- 1701동 지상1층 3호 라인에 관리사무소(MDF실, 방재실 포함)가 설치됩니다.
- 1702동 지상1층 1,2호 라인에 키즈클럽(어린이집)이 설치됩니다.
- 키즈클럽(어린이집) 옥상 및 외벽에 대형 냉난방 실외기가 다수 설치되어 소음/진동/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702동 지상1층 5호 라인에 시니어클럽(경로당)이 설치됩니다.
- 1702동 5호 라인 정면부에 GREEN CAFE(그린 카페)가 설치됩니다.
- 1702동 지상29층 1,2호 라인에 스카이라운지가 설치됩니다.
- 스카이라운지 하부세대에는 인원 및 장비로 인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703동 지상1층 2호 라인에 게스트하우스/COMMUNITY CAFÉ(주민카페)가 설치됩니다.
- 1703동 1호 라인, 1704동 2호 라인 필로티 내부에 유아놀이, 휴게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내부 집기, 비품, 기구 및 가구류의 종류 및 개수,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은 실시공시 분양 홍보물에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하여야 합니다.
-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실내골프센터 및 피트니스센터의 천정 마감 등은 환경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높이 계획이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골프센터 및 피트니스센터는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 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시니어클럽(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해당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동 하부 필로티에 위치한 그로잉센터(공동육아방), 키즈클럽(어린이집), 시니어클럽(경로당)의 지붕은 외부 공용부분으로써, 개인 세대의 점유 및 사용이 불가하며, 관리를 위한 점검사다리가 설치될 수 있어 관리사무소 관리직원 등의 출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td><td></td><td>
• 그로잉센터(공동육아방), 키즈클럽(어린이집), 시니어클럽(경로당) 지붕의 난간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의에 따라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는 지하2층에 세대수의 약 40%로 계획되어 있으며,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 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주동 내부 PIT에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 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외벽면에 관리용 사다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유지관리 편의성을 위한 사항으로 향후 이 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키즈클럽(보육시설), 시니어클럽(경로당)은 주방가구를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부대시설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내 설치되는 각종 가구, 기구, 비품류 등의 종류, 개수, 색채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합니다.
• 키즈클럽(어린이집) 운영주체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에 있는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로 인해 시야 및 조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카이라운지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용 및 이용자 범위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td></tr>
<tr><td></td><td>주차장</td><td>
• 본 단지의 주차장 설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 rowspan="3">총
주차대수</th><th rowspan="3">구분</th><th colspan="6">아파트</th><th colspan="6">근린생활시설</th></tr>
<tr><th colspan="3">지상주차장</th><th colspan="3">지하주차장</th><th colspan="3">지상주차장</th><th colspan="3">지하주차장</th></tr>
<tr><th>일반</th><th>장애인</th><th>전기차</th><th>일반</th><th>장애인</th><th>전기차</th><th>일반</th><th>장애인</th><th>전기차</th><th>일반</th><th>장애인</th><th>전기차</th></tr>
<tr><td rowspan="3">461대</td><td>계</td><td>-</td><td>-</td><td>-</td><td>396대</td><td>16대</td><td>47대</td><td>2대</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층</td><td>-</td><td>-</td><td>-</td><td>144대</td><td>16대</td><td>47대</td><td>2대</td><td>-</td><td>-</td><td>-</td><td>-</td><td>-</td></tr>
<tr><td>2층</td><td>-</td><td>-</td><td>-</td><td>252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장애인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주차는 지하 1층 47대(급속 8대, 완속 20대, 이동식 19대)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운영,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이며, 지하1층 주차장 출입 램프의 높이는 2.7m, 지하2층 출입 램프의 높이는 2.3m이며, 차로폭은 구간 6.0~7.0m입니다.
• 주차대수는 아파트 총 459대(지하 1층~지하 2층, 세대당 1.21대)가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 2대(지상 2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5항 및 제16조)
• 지하주차장 주동 출입은 지하 전체 층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 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지하 2층에 설치되는 펌프실, 열교환실, 저수조 등의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일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 설비공간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 시설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는 남측에 주차장 및 보행자 출입구 1개소가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 1층 유효높이는 2.7m, 지하 2층 유효높이 2.3m로 계획되어 있으며, 택배차량 진입 시 지하1층에 있는 무인택배함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 단지 내 지하층과 연결되는 외부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는 1702동 1,2호 라인 정면부 주변에 설치될 예정으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상세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701동과 1702동 사이에 선큰이 설치되며, 선큰 계단은 지하1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천장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기둥 및 벽체 일부에는 각종 배관, 배선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특성상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항시 천장 유인휀 가동하여 결로를 예방해야 합니다.)
• 1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 해당 주차구간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의 협의, 결정에 따라 입주민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td></tr>
<tr><td></td><td>시스템</td><td>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CCTV,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설치되는 CCTV는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배치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td></tr>
<tr><td></td><td>동별
유의사항</td><td>
• 각 동 주변에는 단지 내 공용시설물이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주동 옥상 파라펫 및 옥탑구조물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상세 위치는 실시공 시 결정됩니다.
• 주동 일부 지상층에는 지하 제연휀룸 급기를 위한 제연급기구가 돌출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각 동별 필로티 하부에 분산 설치되며, 별도의 근린생활시설용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재활용품 보관소는 아파트용 3개소, 근린생활시설용 1개소가 설치되며, 1701동 정면에 1개소(근생용), 1701동, 1702동 사이에 1개소(아파트용), 1703동 정면에 1개소(아파트용), 1704동 배면에 1개소(아파트용)가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쓰레기분리수거차량의 접근 등으로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지붕층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며 설비의 세부사항은 실시공시 결정되며, 설치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은 지하 1층~지하 2층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 1702동 인근에 유아놀이터, 1703동과 1704동 사이에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해 있어 인접한 주동의 세대에서는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 필로티 진입구 및 동 주변으로 주차장 및 발전기실, 전기실 등 급기DA, 배기DA, 제연휀룸용 DA가 설치되어 최하층 일부 세대는 배기팬 설치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냄새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에 면해있는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701동과 1702동 사이에 주민공동시설로 이동이 가능한 선큰 및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702동 지하 1층에 인접하여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센터 등이 설치되며, 1704동 지하 2층에 인접하여 펌프실, 저수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td></tr>
</table>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701동 정면부에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재활용품보관소(근생용), 경비실, 문주가 위치하여 저층 세대는 소음, 분진,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701동 4호 라인 측벽에 인접하여 키즈스테이션 및 DROP-OFF ZONE이 위치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701동 지상 1층에 그로잉센터(공동육아방)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701동 지상 1층 필로티 진입구는 도로와의 레벨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완만한 경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견본주택의 모형 및 비치된 도서를 통하여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702동 지상 1층에 키즈클럽(어린이집), 시니어클럽(경로당)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702동 1,2호 라인 정면부에 재활용품보관소, 유아놀이터, 외부엘리베이터 및 계단 등이 위치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703동 지상 1층에 게스트하우스, COMMUNITY CAFÉ(주민카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703동 정면부에 재활용품보관소, DA, 어린이놀이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704동 배면부에 재활용품보관소, DA, 주민운동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701동, 1704동 사이에 차량 진출입구 및 램프가 위치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차량의 통행, 경보음 등으로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육아방, 키즈클럽(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의 지붕에 철제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1701동, 1702동 정면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옹벽,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 세대는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 점 인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이격거리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화장실 통기관으로 인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유의사항

세대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 입구 공용 부분 및 서비스 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본 공사 시 설치되는 마감자재는 외산 OEM 제품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 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 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비틀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옹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 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전동빨래건조대 사용시 도어와 간섭이 발생하며, 추후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옵션선택 시 이질재 마루접합부위는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벽체 및 바닥 타일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 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주방 및 일반가구, 시스템 선반, 현관 방화문, 마루, 타일, 창호 등)은 본 공사 시 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 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코킹의 위치 및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우물천장, 커튼박스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벽체 종류에 따라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은 설비 환기 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오픈 줄눈으로 시공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부의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단 높이가 부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 배치, 평면 배치, 기타 품목 시공 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세탁기 등을 두는 다용도실 및 발코니, 실외기실의 경우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본 공사 외 개별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세대는 하자 보수 시 인테리어 마감의 원상복구와 관련한 어떠한 민원, 이의제기를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하향식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완강기 설치 예외에 해당하여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하향식 피난시설 설치가 불가한 일부 세대에는 완강기 등 대체 피난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근린생활시설, 재활용품보관함,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층 배수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실외기 등 기계장치의 가동에 따라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주변 여건에 따라 인접 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벽지 도배는 봉투바름으로 시공되며, 공법의 특성상 벽면과 도배지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여 밀착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각종 몰딩 등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정용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루(바닥)는 틈 가공으로 인한 이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음부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 대상이 아닙니다.
	안목/치수	• 주택형의 천장고는 기준층, 최상층 2.3 m로 시공됩니다. • 건축/인테리어 도면의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 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석재/타일	• 인조석재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워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연결 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공극과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등 인조석류는 재료의 특성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일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타일 줄눈 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마감재는 가공 및 생산 방식에 따라 견본주택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 나누기 및 줄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 세대의 창호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창호 분할의 위치 및 개폐 방향, 위치, 유리 사양, 창호 분할 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내·외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규격,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 사양, 개폐 방향, 설치 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AL도어(유상옵션 품목)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유상옵션 품목)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 사양(제조사, 유리,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등)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분합문 커튼박스 높이는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에 따라 높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그릴 및 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방화문의 프레임 및 하드웨어, 규격,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 세대 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 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반 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가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유상 옵션)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 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냉장고 설치 시(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주방 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가구(주방, 일반)의 내부 마감재, 액세서리 및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가구 및 일반 가구는 성능 향상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마감 디테일 및 수납공간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상·하부장의 액세서리 설치 위치 및 고정 상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상·하부장의 내부 수납공간 나누기 및 상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시스템 가구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실외기실	• 본 공사 시 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의 유효 길이, 너비,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하향식 피난구실은 비난방 공간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 레벨은 해당 부위의 용도에 따라 동일 발코니 내에서 단 높이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기능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의 발코니 중 주방 발코니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 방지를 위하여 결로 방지 단열재 및 마감 예정으로 견본주택에 반영되어 있는 위치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청약, 계약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시설의 접이식 사다리 덮개는 SUS 재질 마감입니다. • 하향식 피난구실(관계 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 시 상부 세대에서 하부 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의 피난구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시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발코니 천장에 설치된 전동빨래건조대 사용시 도어와 간섭이 발생하며, 추후 그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에서 빨래 건조시 환기 및 채광이 부족할 경우 건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된 수전류, 소방배관,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발코니 수전 스프레이건용 밸브를 잠금 조치하여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으며 미 잠금으로 인한 동파 발생 시에는 입주자의 부주의로 간주 되어 보수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은 설계도서 기준으로 산정된 예비인증 결과이며, 향후 본인증 심사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 공사 시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환기조절기 등의 위치는 타일의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조절기(온도조절기, 환기스위치, 전기스위치 등)는 제품단종, 개선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 침실 벽체 1개소에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이 노출 설치되어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과 욕조 바닥에는 난방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욕실 내부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됩니다. • 세대 주방 배기 및 화장실 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은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 및 가스차단기까지 시공되며, 차단기 이후 가스쿡탑으로 인입되는 가스 배관은 시공되지 않으며, 필요 시 계약자가 설치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 배관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 배관을 분기하고 공배관에 배관을 삽입 후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 층 세대 인접 공용부 P.D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됩니다. • 동별 외부 가스 입상 배관은 3층까지 방범용 배관 커버가 설치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씽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 형태, 천장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는 사양에 따라 시스템 장비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형 욕실 환풍기와 유상 옵션 복합환풍기의 설치 위치는 기능상 이유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 유상 옵션 품목 및 선택 옵션 품목은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유상 옵션 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각 평형별 유·무상 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 빌트인 냉장고,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및 기타 별도 유상 옵션 계약 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유·무상 옵션 선택 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 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품목 선택 이후 제품 특성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주방 상판 가스 배관 타공 등)의 종류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가전제품(식기세척기, 빌트인냉장고 등)은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설치되며, 고장 및 하자 발생시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에 A/S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의 조명, 디스플레이용 가구 및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및 동가 또는 동질, 동급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 및 동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홈페이지, 팜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급 및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59A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 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타입)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제공품목, 가구 디자인 및 유상옵션 항목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유·무상 옵션 선택 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 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유상 옵션),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에는 계약을 체결한 품목 외에 전시품 등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 형태 및 가구 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기준층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CG 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 형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수·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바닥 배수구, 온도조절기, 천장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수량,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 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서의 내용에 준하며, 향후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유닛, 세대 모형, 주민공동시설,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설치)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 조경 및 식재, 차·보도 선형, 주변 환경, 부지 레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설계 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 환경,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수량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서 실제 시공 시 관련 법령에 의거 변경(사양, 수량, 위치)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사진, VR 등은 견본주택 오픈 전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각종 전시 상품 및 유상 옵션 품목이 포함된 사진, VR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시공 범위는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주택형 및 세대별 단지 배치, 개인 취향에 따라 마감재 변경(색상 등 포함), 위치 변경은 불가하오니 견본주택 및 도면상 내용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 품목(유상 옵션) 등을 대부분 설치한 세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설치 및 시공 내용,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 배선 관련 제품과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 사양 및 온도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VR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컬러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등), 유상 옵션 품목,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발코니는 실 시공 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 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 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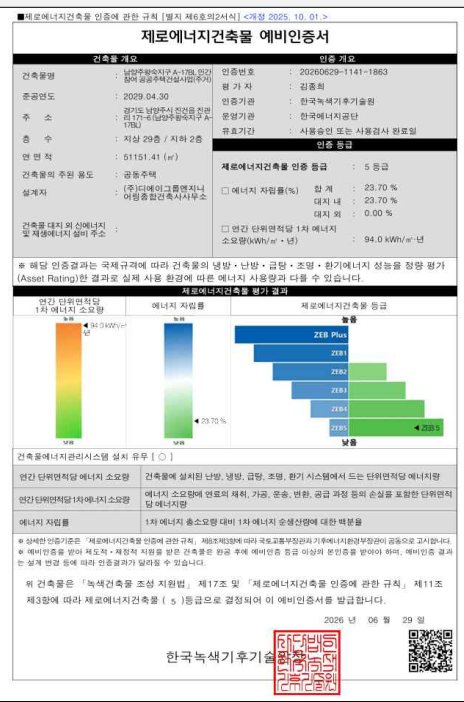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급수펌프 (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KS 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라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성능등급 표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인증서로, 각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 여건 및 본인증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녹색건축예비인증의 세부 항목별 등급 및 점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의 세부 항목별 점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 공시**(주택법 제5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97,969,500
			기간이자	6,742,850
			필요적 경비	98,897
			그 밖의 비용	-
			계	104,811,247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1,029,191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341,922
			석축공사	-
			우·오수공사	1,118,773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도로포장공사	825,928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207,973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3,263,369
			부대시설공사	216,921
			계	7,004,077
		건축	공통가설공사	3,853,253
			가시설물공사	501,724
			지정 및 기초공사	416,374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25,864,805
			용접공사	-
			조적공사	1,147,624
			미장공사	2,277,948
			단열공사	720,869
			방수·방습공사	991,916
			목공사	3,316,000
			가구공사	2,941,148
			금속공사	1,245,662
			지붕 및 홈통공사	501,724
			창호공사	3,206,428
			유리공사	749,704
			타일공사	1,718,553
			돌공사	1,072,654
			도장공사	1,107,255
			도배공사	1,038,052
			수장공사	1,222,595
			주방용구공사	3,500,543
			잡공사	380,619
			계	57,775,450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2,229,359
			급탕설비공사	1,519,432

구 분				총 액
			오배수설비공사	765,056
			위생기구설비공사	1,218,357
			난방설비공사	1,203,128
			가스설비공사	472,113
			자동제어설비공사	201,497
			특수설비공사	-
			공조설비공사	482,589
			계	8,091,531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7,951,591
			정보통신공사	3,499,646
			소방설비공사	3,623,441
			승강기공사	2,430,760
			계	17,505,438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5,242,764
			이윤	3,145,659
			계	8,388,423
	간접비		설계비	1,244,603
			감리비	857,612
			일반분양시설 경비	3,702,766
			분담금 및 부담금	-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958,899
			계	6,763,880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8,390,324
합계				228,730,370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나라감정평가법인	나. ㈜대한감정평가법인
97,969,500,000	97,527,000,000	98,412,000,000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 전기 / 통신 / 소방
상호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건창엔지니어링 /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 ㈜정일씨엠 / ㈜삼진탑테크엔지니어링
계약금액	15,824,601,349

※ 감리회사 및 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7.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단위 : 천원]

항목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계	기간이자	기타비용	계	법정초과복리시설설치비용	공동주택성능등급가산비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친환경주택건설추가비용	지하주차장층고증가추가비용	설계비추가비용	감리비추가비용	기초지반공사비		안전관리비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가산비	사업승인부가조건가산비
							홈네트워크	초고속통신	에어컨냉매배관	기계환기설비					암석지반공사비	흙막이공사비		전기자동차충전 시설	
금액	6,841,747	6,742,850	98,897	18,390,324	1,651,695	792,468	2,142,936	454,602	708,810	918,272	1,919,610	287,281	155,575	2,673,290	871,142	3,166,645	101,426	113,455	2,433,117

8.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및 시공사 현황

구분	공공시행자	민간사업자 겸 시공사				
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한신공영㈜	쌍용건설㈜	㈜대승글로벌	㈜고덕종합건설	㈜지아이
사업자등록번호	420-82-00573	114-81-04605	120-81-01957	106-87-08975	209-81-12984	410-81-58498

※ 본 사업은「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사업자(한신공영㈜, 쌍용건설㈜, ㈜대승글로벌, ㈜고덕종합건설, ㈜지아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며, 분양주체는 한신공영㈜입니다.

9.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왕숙 한신더휴 센텀 견본주택



■ **위치안내**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9번지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2026.11.20. ~ 2026.11.29. 10:00~17:00 (사전방문예약제 운영)

※ 그 외 자격검증 서류제출, 정당계약체결 등 해당자에 한하여 해당 일자에 방문 가능합니다.

■ **분양문의 : 1833-6650** (10:00~18:00)

■ **공식홈페이지 : https://ws-thehue.com**